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45380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15.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19가단5077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6,729,023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729,0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1)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H에 대한 부양비용을 혼자 지출하였으므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그 비용 일부를 상환할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동등하게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데, 제1심이 인정한 가액배상금 26,729,023원은 채권자인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금액으로 부당하므로, 피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가액배상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수익자로부터 찾아온 재산 또는 재산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회복되고, 총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액배상금을 다시 산정해야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평균, 판사 고충정, 판사 지상목

1) 이유 부분 마지막 행(8면 6행)의 “연 20%”는 ‘연 5%’로 경정되었다.